

# 방 송 통 신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전번호 제2016 - 51 - 192호

안 건 명 단말기유통법상 법인영업 관련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16. 9. 7.

### 주 문

1. 피심인들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.
2.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(휴업일 제외) 각 공표하여야 한다.
3. 피심인들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 보고하여야 한다.
4.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금 액 : 각 1,5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# 이 유

### 1. 사실조사 결과

#### 가. 조사 대상

- 조사대상 기간(16.1.1.~6.30.)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 '단말기유통법') 민원제보, 모니터링결과 등을 토대로 파악된 59개의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.

#### 나. 행위사실

-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,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  -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에 추가로 100분의 15를 더한 금액보다 더 많은(즉 그 금액을 초과한) 지원금(이하 '과다지원금')을 지급하였다.
-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8월 2일 '행정처분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각 부여하였다.

## 2. 위법성 판단

### 가. 관련법 규정

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은 (i)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,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(ii)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점·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.

#### <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>

##### 제4조(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)

-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##### 제13조(사실조사 등)

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(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), 대리점,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·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### 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각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(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)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.

## 3. 시정조치 명령

### 가. 위반행위의 중지

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.

## 나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
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(휴업일 제외) 각 공표하여야 한다.

### < 공표문안 >

○○○(유통점명)은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' 위반을 이유로  
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



○○○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'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
2016년 0월 0일

○○○(유통점명) 대표자 ○○○

※ 공표문 크기 A2(42cm × 59.4cm), 활자크기 2.0cm×2.5cm이상

## 4. 과태료 부과

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[별표 3]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.

### 가. 기준금액

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및 [별표 3]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.

**< 과태료 부과기준 >**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<br>법조문        | 구분           | 과태료 금액(만원)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회<br>위반   | 2회<br>위반 | 3회<br>위반 | 4회<br>이상<br>위반 |
| 라.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<br>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<br>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<br>추가로 지급한 경우 | 법 제22조<br>제3항제3호 |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| 100        | 300      | 600      | 1,000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대규모유통업자      | 500        | 1,500    | 3,000    | 5,000          |

※ "대규모유통업자"란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에 속하는 대리점·판매점을 말하며, 피심인들은 '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'에 해당 한다.

**나. 추가적 가중**

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및 [별표 3]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,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,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인 점 등의 사유로 부과기준 금액의 50%를 각 가중한다.

**다. 최종 과태료**

이에 따라, 피심인들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,000,000원에 50%를 가중한 금액을 합한 1,500,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.

**5. 결론**

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(시정명령) 및 제22조(과태료)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,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위원장      최 성 준



부위원장      김 재 홍



위      원      김 석 진



위      원      이 기 주



위      원      고 삼 석

